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2호(2015): 423-447
투고일 2015. 01. 31, 심사일 2015. 02. 25, 게재확정일 2015. 03. 23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정 일 영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정 일 영**

〈요 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고립시켜 나갔다. 전후 북한의 인민들은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하에서 감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

주제어 : 북한, 한국전쟁, 일탈, 처벌, 재사회화

---

* 이 논문은 정일영(2014),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정치학 박사

목 차

Ⅰ. 서 론
Ⅱ. 국가건설기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Ⅲ. 한국전쟁과 전시통제체제의 일상화
Ⅳ. 전후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Ⅴ. 결 론

Ⅰ. 서 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사회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사회의 안정성과 변화가능성을 고찰함에 있어 일탈행위의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의 대응 즉,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은 언제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1950), 한국전쟁기(1950-19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19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일탈과 처벌, 그리고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억압기구와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일탈행위에 관한 사례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 대표적으로, 전현준(2003)은 북한의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사회억압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보위사령부 등이 억압적 통제기구가 북한주민들을 2중, 3중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우영(1999)은 북한사회에서 처벌과 재사회화의 기제를 사회통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통제체제를 물리적 통제와 사회적·이념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통제

는 당을 통한 조직적 통제와 각종 물리적 억압기구를 통한 통제, 사법제도 및 독특한 처벌제도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이념적 통제는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학습과 집단별 차별적 대우를 특성으로 하는 계층정책, 그리고 모든 인민을 체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배급제도를 핵심으로 하였다. 박광섭(1992)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형사법제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인민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이동의 통제는 전후 '파괴분자'의 활동과 '계급적 적대분자'의 저항에 대한 투쟁을 이유로 정당화 되었으며 결국 형사법령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학립(2012)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대응과정을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근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인과 관료계층간의 '일상화된 뇌물관계'와 빈부격차의 확대가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사회적 일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1] 이와 같이 기존연구는 사회적 일탈과 처벌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된 기원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일탈(deviance)은 구성원의 행위가 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Liska 1986, 1)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자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복귀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재사회화는 일탈자에 대한 처벌과 일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을 포함한다.

일탈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재사회화의 억압적 이행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과 민법에 기반하며 구체적으로 벌금, 감금, 사형, 손해 또는 배상을 통한 강제적 법·제도를 통해 집행된다.(Maciver & Page 1969, 142-144) 일탈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처벌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국가단위에서 재사회화는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가와 사회관계에서 형성되는 넓은 의미의 제도, 즉 정치와 경제의 각 부문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그리고 표준화된 관행 등 다양한 행위양태의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Hall 1986, 19)

사회주의국가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과정은 프롤레타리아 계

1)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적 일탈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영호·김용호 (2014). "북한의 범죄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송인호·이승은 (2014).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46권, 이학립 (2012). "북한의 범죄행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등이 있다.

급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목적으로 건설된 사회주의국가에서 재사회화는 구성원을 노동계급으로 개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롤로타리아 계급정당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조직들은 당 지도부가 견지하는 입장을 절대적인 준거로 채택하게 되며 인민대중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재사회화 된다.(서재진 2002, 16)

이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었다. Ⅰ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Ⅱ장은 해방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인민민주주의' 규범 하에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Ⅲ장은 한국전쟁을 통해 성립된 전시통제체제하에서 일탈이 이적행위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전시처벌이 군중재판의 형식을 통해 이행되었음을 논증한다. Ⅳ장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전시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Ⅱ. 국가건설기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1. 해방과 반제·반봉건 조치의 이행

해방과 함께 북한의 임시정권은 식민지·봉건규범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이행하였다. 1946년 3월 23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20개조 정강을 공포하게 되는데 반제·반봉건 조치의 이행에 대한 임시인민위원회의 의지와 향후 건설될 국가의 지향점을 담고 있었다. 20개조 정강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의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개조 정강은 이후 진행된 '민주개혁'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과 친일·반민족자들에 대한 처벌의 준거가 되었다. 20개조 정강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제통치의 일체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김일성 1960, 54-55)

20개조 정강의 제1항과 제2항은 북한의 임시정권이 추진한 국가건설의 목표를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봉건규범을 정치·사회의 전영역에서 근절하고 동 규범의 생산자라 할 수 있는 구지배층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11항은 토지소유제의 개혁을 통해 일제와 봉건지주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시키고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를 공약하였다. 정강들은 반제·반봉건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일제식민시기의 지배계층, 즉 지주와 친일세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처벌이 강제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색출하고 민중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하였다. 민중재판은 "잔존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들의 애국적 정열을 더욱 고무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한락규 1960, 165) 민중재판은 인민에 의한 직접처벌이라는 방식을 통해 식민지·봉건규범을 해소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검열, 통제하는 사회적 기제로 활용되었다.

북한에서 국가의 건설은 민주개혁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헌법"이라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에서 발생된 전변들로부터 출발하여 이 위대한 전변들을 반영하였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였다. 이 헌법에는 조선인민의 극악한 적인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 민족반역자,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예속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착취를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부강한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지가 표현되여 있다. … 헌법에 선포된 민주주의 정권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헌법에 선포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이며 토지개혁과 산업, 운수, 은행, 체신 등을 국유화한 결과에 인민의 수중에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집중된 사실은 이에 대한 물질적 보장으로 되는 것이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236-241)

북한은 식민지·봉건규범의 형성자라 할 수 있는 친일파와 지주 등 구지배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형법의 제정을 '인민민주주의'규범을 공고화하기 위한 중요과제로 추진하였다.(박광섭 1992, 29) 형법 제79조는 "일본 기타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책

임적 또는 비밀적 직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조선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과 인민민주주의운동을 적극적으로 박해 탄압한 자는 제66조에 규정(사형 및 전부의 재산 몰수)한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서대숙 2004, 279) 형법을 통해 북한당국은 반제·반봉건 조치를 제도화하고 구지배세력의 정치적 복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2. 사회통제 법령과 형법의 제정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 이행된 '민주개혁'조치들과 입법조치들은 친일·반민족세력을 척결하고 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 하에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은 '민주규범'에 대한 저항은 반민·반민주로 규정되어 처벌과 재사회화의 대상이 되었다. 1946년 1월 26일 북조선 사법국은 각종의 포고를 통해 민주개혁조치에 따른 저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포고 제10호 <인민위원회 또는 북조선 각 국의 결정 지령 명령 등 위반에 관한 건>은 3.7제를 비롯하여 기타 새롭게 건설된 법질서에 저항하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준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포고 제9호 <농산물 매상 불응 등 처벌에 관한 건>, 포고 제11호 <조세 체납 처벌에 관한 건> 등이 공포되었다.(한락규 1960, 167-168) 이와 같은 조치들은 임시정권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임시인민위원회는 사회통제를 위한 법령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로 1947년 1월 24일 <생명 건강 자유 명예 보호에 관한 법령>(결정 제164호), <개인 재산 보호에 관한 법령>(결정 제165호), <북조선의 인민 보건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법령<(결정 제165호) 등을 공포하였다. <생명 건강 자유 명예 보호에 관한 법령>은 "주권을 장악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한 결과로 보장된 인권을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함"을 규정하였고, <개인재산 보호에 관한 법령>은 "자기의 행복과 즐거운 생활을 위하여 차지할 수 있게 된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였다.(한락규 1960, 179-180)

북한은 건국헌법에 기초하여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채택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적 일탈을 처벌하고 일탈자들을 재사회화하기 교양적 법규로 강조되었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이 법이 "법령과 형사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된 반혁명과의 투쟁

에서 거둔 인민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한인섭 2009, 93)

북한형법의 정치·형법적 특징은 첫째,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및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사회적 위험성'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박광섭 1992, 42-43) 형법 제7조는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서대숙 2004, 266) 형법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도구로서 '인민민주' 제도와 법질서를 여타의 저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었다.(심현상 1957, 21)

새롭게 제정된 형법은 형벌의 적용에 있어 교양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형법은 "낙후한 인민의 의식내에 존재하는 낡은 사상잔재로 말미암아 범죄를 수행하는 견실치 못한 인민들을 형벌에 의하여 새로운 규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양"하는 것을 자기 과업으로 강조하였다.(심현상 1957, 21-22) 북한에서 형벌의 목적은,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새로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고, 범죄의 일반적 예방하며,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하는 것이었다.(서대숙 2004, 268-269)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며 재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형법의 대내외적 기능을 "전복된 반동 계급들을 진압하며, 남반부 지역에서 미제의 주구 리승만 도당들의 지배를 소탕하며, 전 조선 지역에 인민민주제도를 확립하며, 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이 계속 파송하고 있는 간첩 파괴 암해 분자 살인자, 이들과 결탁한 북반부에서의 전복된 계급들, 종파분자들의 온갖 반혁명적 범죄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것"을 형법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하였다.(심현상 1957, 22-23) 북한의 형법에서 나타나는 재교육, 교화의 기능은 형벌을 통해 일탈자를 처벌하되 이들을 '인민민주주의'규범에 준하여 재사회화함을 의미하였다.

3. 군중동원과 교육사업을 통한 재사회화

군중동원과 교육사업은 북한에서 구성원을 일상적으로 재사회화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었다. 1946년 12월 북조선로동당은 반제·반봉건 조치와 함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제기하고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북민전)을 중심으로 이를 전개해 나

갔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또한 <건국사상총동원선전요강>을 발표하고 각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 공장, 농촌 집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식민기의 식민지·봉건규범을 타파하고 의식개혁을 기초로 생활과 생산에서 혁신을 추구한 국가동원운동이었다. 총동원운동은 노동경시 풍조·개인주의·향락주의를 척결하고 생산과 국가건설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청산하며 비관적·염세적·타락적인 사상을 제거함으로써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다.(박영자 2005, 39) 이와 같이 총동원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개혁' 조치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계몽운동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5단계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1단계에서 각종 군중집회와 열성자회의를 통해 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결의하고, 2단계에서는 당과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간부학습회·세포학습회·강연회 등 교양을 통해 당의 결정과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문헌학습을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학습단위별로 7일간의 '집체학습'을 수행하고, 4단계에서는 각 당 세포와 초급당단체별로 총회를 열고 잘못된 관행과 유습에 관하여 상호 간에 비판하는 사상투쟁을 15일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열성자회의를 통해 총화하였다.(김광운 2003, 342-343)

총동원운동은 북조선로동당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전반으로 사상개조와 혁신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다수 당원이 정치적 단련과 이론적 준비가 미약함을 지적하고 학습회, 야간당학교, 당 도서실, 강연회, 출판물, 강습회 등을 활용하여 당선전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 간부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도·시·군 위원회 내에 '당 지도일꾼 열성자 야간 당학교'를 조직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간당학교는 매주 2차례에 걸쳐 2시간씩 진행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0, 250-253)

교육사업은 '인민민주주의'규범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로 강조되었다. 특히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문맹퇴치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김일성은 한글학교와 성인학교에서는 139만 4,000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1947년도에는 80만명 이상의 문맹을 퇴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1948년 현재 북한의 인민학교 수가 3,008개로 학생은 135만여 명으로 1942년도에 비하여 230% 증가하였다고 강조하였다.(김일성 1954c, 128) 일례로 1948년 강원도 인제군당의 상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명퇴치 100% 완수를

위하여 잔존문맹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조사하고 문맹자 명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1984, 690) 정당·사회단체의 연합조직인 북민전 또한 문맹퇴치운동에 대한 선전사업과 한글학교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제기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9, 6-7)

북한은 군중동원과 교육사업 이외에도 통제기구를 활용한 일상적 감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1946년 2월 8일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보안국 산하에 감찰, 경비, 호안, 그리고 소방 등의 부소와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독립부서인 정치보위부를 두었다. 이후 동년 5월 11일 보안국 산하에 '보안독립여단'이란 무장 경찰조직을 발족시켰다. 당시 김일성은 "보안독립여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로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대내외 원쑤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북한의 핵심적인 사회통제기관인 경찰(인민보안성), 비밀경찰(국가안전보위부), 경호국(호위총국)의 활동지침이 되었는데 이를 '5.11교시'라 하였다.(전현준 2003, 17-19)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는 제국주의·봉건규범을 해체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Ⅲ 한국전쟁과 전시통제체제의 일상화

1.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시체제의 성립

전시에 국가는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군사지휘체계에 기반한 전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1950년 6월 26일 단행한 방송연설에서 인민들에게 전시태세로의 전환을 호소하였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전시태세로 개편하여 원쑤들을 단기간에 무자비하게 소탕하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동원"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54b, 8)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공포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을 중심으로 위원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을 선출하였다. 정령은 국내의 일체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전체 인민들과 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

야 함을 선언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52, 82)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성립된 전시체제는 군사통제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를 군사범죄에 준하여 처벌함을 의미하였다. 1950년 8월 21일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하여> 정령은 군사행동구역에서 군사상 범죄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보위,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하여 반국가적 범죄, 국가 관리를 침해하는 범죄, 살인, 강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군사재판소의 관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전시범죄에 관한 군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심현상 1957, 53-5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12월 28일 정령 <명령이 없이 전투 지구와 전투장에서 무기와 전투 기재를 포기한 군무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를 공포하였다. 동 정령은 "명령이 없이 자기 전투구역을 포기하였거나 혹은 전투장에서 무기 또는 전투 기재를 방기한 군무자는 엄중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민의 원수로 인정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한락규 1960, 195)

전시체제하에서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생산현장에서의 일탈행위는 범죄행위에 준하여 처벌되었다. 군사위원회 결정 제6호 <전시 노동에 관하여>(1950년 7월 6일)는 작장노동자, 사무원의 자의적 직장 이탈, 무단결근, 지각 등을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직장 책임자의 의무적 기소 등을 규정하여 직장에서의 엄격한 노동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였다.(심현상 1957, 56)

인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기층단위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통해 이행되었다. 1950년 9월 강원도 철원군 내무서장이 작성한 단속 통계표를 보면, 불심검열, 일제검열, 숙박검열, 공민증단속, 통행자단속, 산간수색, 해안단속, 재차단속 등의 항목을 두어 단속현황을 군당에 보고하였다.(전회림 1993a, 114) 1950년 9월 작성된 철원군 내무서장의 지시에 따르면, 월북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인민군대 혹은 의용군으로 가장하여 관할지역에 진입하는 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민증 단속과 불심심문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전회림 1993b, 155-159) 월북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소지품 검사와 신문을 철저히 실시하며 정치보위부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월북자 중 간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전회림 1993c, 151)

2. 군중심판을 통한 전시처벌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선은 급격히 북상하였다. UN연합군의 북상

과 함께 북한은 패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11월 27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선은 다시 빠른 속도로 남하하였다. 조·중연합군의 성립과 함께 한반도 북반부를 재점령한 북한은 적들에게 동조한 이적행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낙인찍는 사회적 숙청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점령의 상황은 구성원의 행위를 검증하는 정치·사상적 잣대가 되었다.

UN연합군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되었던 지역을 회복한 북한은 잔존한 저항세력을 해소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북한은 우선 피점령과 재점령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해서는 '관대정책'에 대하여 해설과 선전을 병행하였다. 또한 저항세력들의 친척 또는 체포·투항한 자들을 통해 귀순을 종용하였다. 이에 불응할 경우 각 지역의 경비대와 인근의 인민군대가 합동으로 포위·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남상호 1993d, 216-218) 피점령기 적들에게 동조한 구성원을 색출하는 작업이 정리된 이후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의한 처벌과 사회적 숙청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군중심판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결정 제44호 <적에게 림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 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1951.1.5)>를 통해 이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 다수 인민을 동원하는 방식, 즉 과거 해방시기 활용되었던 인민재판의 형식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군사위원회 결정 제44호에 근거하여 그해 2월 내각결정 제203호 <군중 심판회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한락규 1960, 197-198)

군중심판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분자들을 전체 인민들이 발동하여 대중 앞에 폭로 규탄"하는 자리로 군중동원을 통한 사회적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 지시 제657호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 시행요강에 관하여>는 군중심판회의 집행을 위한 요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군중심판은 동 지시에 기록된 요강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또한 집행과정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군중심판회를 통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두문근신(杜門謹愼)을 통해 이적행위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정이 주를 이루었다.(김일성 1996, 62-63)

군중심판회에서 두문근신을 선고받은 자들은 집 대문과 자신의 가슴에 '두문(杜門)'이라는 표식을 붙이도록 강제되었으며 이러한 처벌이 집행되고 있는지 관할 내무원들이 감시하도록 하였다. 두문근신을 선고받은 자들은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었고 이들 주거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남상호 1993b,

308-310) 처벌의 한 형식으로서 '두문'은 전시상황에서 이적행위자를 일반주민들과 고립시키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인민들이 군중심판을 진행하고 자수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부모 형제를 박해 학살한 원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인민은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교양되었다"고 강조하였다.(한락규 1960, 197-198)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탈행위가 구성원으로부터 비난당할 때,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재사회화 된다.(진 밀러 & 윤혜미 1995, 135) 피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경험은 피점령지를 회복한 이후 국가가 일탈(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준거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전시통제체제의 일상화

단기간 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던 휴전협상이 2년 여간 지속됨에 따라 후방에서의 전시통제체제는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천착되어 갔다. 한국전쟁 초기 전선의 이동에 따른 점령과 피점령, 그리고 재점령의 과정이 일단락된 것은 1951년 2월 11일 UN연합군이 서울을 재탈환한 이후의 일이다. 혼란스럽던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복귀되었고 전선에서의 고지전과 후방에서의 동원체제가 일상화되었다.

휴전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후방에서 일상적인 주민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51년 4월 사회안정성을 창설하게 된다. 사회안정성은 구성원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와 감시업무를 주로 하였다. 사회안정성은 주민에 대한 등록업무와 주민요해, 이동, 출생, 결혼, 사망 등 기록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여행증명의 발급과 여행객에 대한 검문검색 업무를 통해 구성원들을 감시·통제하는 기구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보위부는 피심자와 미체포자, 그리고 38이남 도주자 가족과 친척들을 등록하여 관리하였다.(한성훈 2010, 63-64) 김일성은 1951년 2월 포고문을 통해 전선 후방에서의 감시와 자발적 신고를 강조하였다.

"1. 전체 공민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지방주권 기관의 허가 없이 면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숙박시키거나 은폐함을 절대 금지한다. 2. 전체 공민들은 지방 주권기관의 허가 없고 또는 신청서가 없이는 운수 기재 식량 등을 발급함을 금지한다. 3. 신분증명서 혹은 출장 증명서가 없이 돌아다니는 군무자들을 즉시 경무부와 내무기관에

보고할 것이며 경무부와 내무기관에서는 이를 체포하여 해당 기관에 압송할 것이다. 4. 본 포고문 위반자는 전시법대로 처리할 것이다."(김일성 1954a, 206-207)

북한은 또한 피점령지의 회복 이후 군중심판을 통해 드러난 이적행위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강화하였다. 감시대상자는 만14세 이상자로 범죄를 지을 우려가 농후한 자로 이들을 감사하기 위해 정보원을 지역별, 직장별로 배치하였다. 요감시 대상자는 따로 등록되어 "생활과 사업면"에 관한 20여 가지 감시사항을 기록하여 월평균 2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감시인이 이동할 시에는 요감시인 이동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남상호 1993c, 244-253)

북한은 또한 후방에서의 사회통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1952년 5월 공민증을 재발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내무성령 제2호 <공민증에 관한 규정>은 18세 이상 공민은 공민증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18세 미만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공민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6, 435-441) 이와 같은 조치는 후방지역에서 이색분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인민상호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주민들에 대한 감시는 주민간 상호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5가작통조직사업은 간첩, 반동, 미체포자, 그리고 군무도피자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요구되었다. 5가작통조직은 5가를 기본으로 하여 당원, 자위대원, 열성농민 등의 핵심일군을 조장으로 하여 조직되며 친척, 친우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숙박을 요하는 경우 신속히 조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보고를 접수한 조장은 리(里)정권기관이나 자위대본부에 보고하여 위협분자로 판명될 경우 인근부락의 자위대와 협동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남상호 1993a, 360-361) 외부의 적과 이적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단행된 5가작통의 통제망은 인민 스스로 상호감시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사회통제에 대한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Ⅳ 전후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1. 전후 준전시체제의 지속

개전초기의 역동적 전개와는 달리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된 이후 2년 여간 지속된 휴전협상은 결국 1953년 7월에 가서야 체결되었다. 전쟁이 종결이 아닌 휴전협정을 통해 연장됨에 따라 전시체제의 성격은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전후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일탈은 전시에 준하여 이적행위와 동일시되었고 국가의 처벌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북한은 범죄행위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간첩 파괴 암해분자, 테로분자들의 교활한 범죄적 시도들'과 연계시켜 혁명적 경각심을 요구하였다.(심현상 1957, 63-64) 연장선상에서 형벌은 '소수의 적대 계급들의 잔재 내지 제국주의 주구, 민족 반역자들과 낡은 사상 잔재들의 보전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형벌 적용은 공화국 인민민주제도와 법질서를 원수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범죄자 및 낙후한 인민 계층을 교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형법은 형벌 적용의 목적이 "1)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새로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 범죄의 일반적 에방을 위하여, 3) 죄를 범한자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제27조 1항)"라고 명시하였다. 재판소 구성법 또한 제5조에서 형벌 적용에 있어서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교양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심현상 1957, 230-235) 즉 형법이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사회화의 기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전시제도라 할 수 있는 배급제도를 전후에도 유지하고 이를 사회통제의 기제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58년 식량을 제외한 배급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량과 주택, 그리고 소비품 등에 대한 국가공급체계가 유지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되었지만 배급제는 물자의 부족과 사회통제의 효율성에 있어 유효한 통치수단이었기 때문이다.(서동만 2005, 485) 북한에서 배급은 인민 개개인의 소속단위별로 이행되었고 이는 개인의 일탈을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국가공급체계는 생산단위에서 생산주체와 인민들에 대한 물질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구성원의 일탈을 억제하는 기제로 발전하였다. 먼저 생산단위에 대한 물자의 국가독점적 공급은 각 생산단위를 국가가 통제하는 핵심기제로 발전하였다. 또

한, 국가가 구성원에 대한 물자공급, 즉 의·식·주에 필요한 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개별구성원이 배급체제에 절대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각 생산 및 생활단위에 소속된 인민은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단절의 사회통제체계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이우영 1999, 54)

북한은 또한 전시노동체제를 전후에도 지속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요구된 전시노동규율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한다는 명분하에 강제되었다. 휴전과 함께 북한은 <기업소 및 기관 로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리탈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이는 전후의 혼란속에서 노동유연성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한락규 1960, 207) 만약 노동자가 임의로 직장을 이탈할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해졌던 것이다.(한성훈 2010, 318) 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됨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체제하에 노동력에 대한 억압적 처벌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2. '적대계층'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

한국전쟁 당시 북한사회의 저항적 요소가 남한이라는 이탈지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점은 전후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전쟁을 통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는데 특히 지배계층의 이탈은 북한사회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민간원조사령부는 남북으로의 왕례가 사실상 어려워진 1952년 1월 인구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남한 총인구는 2,094만 7,623명으로 이중 월남자는 72만 1,072명으로 조사되었다.(서중석 외 2010, 112-118) 북한정권에 대해 정치·사상적인 부정인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 특히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민이 북한을 이탈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내에서 저항적 요소가 축소되었다. 반대로 전쟁을 통해 확장된,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무의식적 충성계층은 지도자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기반으로 적대계층에 대한 처벌과 고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6년 8월 있은 종파사건은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의 승리로 종결된다. 8월종파사건은 조선로동당을 시작으로 전사회적 종파척결을 추동하였다. 북한은 평안남도 당단체에 대한 '집중지도 검열'을 시작으로 단행하였으며 1957년에는 도인민위원회 및 군인민위원회 소재지에서 박헌영과 이승엽 등에 동조한 국내파세력에 대한 사회적

숙청이 단행되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1, 57)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1960년 말까지 2년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구성원을 '혁명적 요소', '반혁명적 요소', '중간층'의 3계층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북한은 특히 계급적성분이 지주나 자본가 등 적대계층에 속하며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반공단체 등에서 간부급 이상으로 범죄를 범하고 월남한 자의 가족으로 가장 '악질'로 보는 층이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와 자위대 등에 참여한 이적행위자들을 재심하고 계급적 성분이 좋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 이후 월북한 남한출신자들은 박헌영과 같이 혁명의 변절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인민은 월남자가족 및 한국전쟁 당시 반공단체에 가입했던 자와 그 가족 약 200만명, 한국전쟁 당시 군대기피자와 과거 지주, 개인상공업자, 종교인, 종파관계자와 그 가족 등 약 20만명, 귀환포로 및 그 가족 약 40만명, 남한출신자 및 입북자와 그 가족 약 40만명 등 약 300만 명에 이른다.(김남식 1972, 208-211)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적대계층의 분류에 있어 한국전쟁 당시의 행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년 여간 진행된 집중지도사업의 결과 적대계층으로 규정된 구성원들은 강제추방, 구속(처형), 그리고 노동교화 등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불순분자로 지명되어 추방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해안선과 휴전선으로부터 20km, 평양과 개성시로부터 50km 이외 지역"으로 추방하되었으며 해당 지역 외에 이동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집중지도대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는데 1년 여에 걸쳐 추방되었다. 이들 추방자들은 "평양시에서 약 5,000세대, 개성지역에서 약 600세대, 황해남도에서 약 1,500세대, 강원도에서 약 1,000세대로 총 8,000 여세대"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처형되거나 구속된 자들은 "평양시에서 약 1,000명, 개성지역 약 300명, 황해남도에서 약 600명, 강원도에서 약 600명 등 2,500 여 명"에 달했다. 또한 '로동교화대상자'로 처벌된 구성원은 약 5,500 여명이었다.(김남식 1972, 212-213) 북한은 적대계층을 일반주민과 고립시킴으로써 저항적 요소를 제거하고 '혁명적 요소'와 '중간층'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재사회화체계를 구현하게 된다.

3. 직장과 가정의 통제: 일상적 재사회화

전후 북한에서 일상적 재사회화는 직장(생산단위)과 가정(생활공간)에 대한 통제

를 통해 이행되었다. 북한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가에 순응하는 인민의 정형을 만들고자 하였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1950년대 사설 중 사회문화분야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인내, 창의성, 반(反)보수주의, 규율, 질서, 공중도덕, 변화에의 적응력, 계획성, 적극성, 책임성과 같은 태도와 정향의 실천이었다.(이온죽 1988, 149) 북한에서 일상적 재사회화는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에서 구체화되었다.

먼저 생산공간에서의 재사회화는 작업반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쟁운동과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1956년 12월 김일성은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고 국가재건의 동력을 내부에서 동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였다. 이후 생산현장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조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공간에서 개인의 재사회화를 강제하는 기제로 정착하였다. 1959년 3월 9일 강선제강소 제강직장 진응원 작업반의 발기로 개시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노동자의 사상의식을 강조하고 생산단위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직업동맹출판사 1964, 8-10)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문화, 보건부문, 그리고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모든 단위로 확장되었다.(오기완 1972, 256)

생활공간에서 진행된 재사회화는 주거공간을 근간으로 하는 인민반 활동과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인민반은 생활공간에서 가족단위의 구성원을 통제하고 교육과 감시, 동원을 추동하는 재사회화의 기초단위였다. 특히 인민반장은 주민통제의 기층행위자로서 동사무소와 보안서에 주민동태를 보고하고 과업을 부여받아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안찬일 외 2006, 441) 이와 함께 학교는 조직생활을 통해 규율의 엄격성을 채득하고 집단주의를 생활화함으로써 국가에 순응하는 인민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강조되었다.

전후 북한의 모든 성인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생활과 사상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재사회화의 구조에 귀속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단체는 4개의 '근로단체, 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을 말한다. 이들 근로단체들은 연령별, 직업별, 성별로 조직된 대중단체로 조선로동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규정되었다.(사회과학출판사 1989, 175-177) 각각의 생산공간에서 개인은 근로단체에 의해 진행되는 정치행사, 군중동원, 생활총화 등을 통해 재사회화의 구조에 포섭되었다. 특히 생활총화는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 속에서 반드시 참여

해야 하는 생활의 일부로 강조되었다. 사상학습은 각 단체별로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진행되는 독보모임, 방과 후 매주 1회 진행되는 혁명사상 연구모임, 시기별로 제기되는 강연회, 혁명전적지 답사, 학명사적관 견학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실시되었다.(안찬일 외 2006, 426)

조직생활은 일상적인 교육 이외에 상호비판과 자기비판의 형식을 통해 공고화 되었다. 자아비판은 해방이후 공산당원들에게 요구된 조직생활의 일부분이었다. 자아비판은 당원이 자격과 자신의 그릇됨을 솔직히 동지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자기자신을 교육하고 단련하는 무기인 동시에 당내민주를 나타내는 중요한 형식으로 정의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아비판은 상호간 비판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 1982, 76) 비판과 자기비판은 관료주의와 공명주의, 형식주의 등 각종 반인민적 작풍과 낡은 사상잔재에 따른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일상화 되었다.(이종석 1993, 138-139) 결국 개인은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단절의 사회구조 속에서 원자화 되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방하기 보다는 자기통제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Ⅴ 결 론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1950), 한국전쟁기(1950-19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19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한국전쟁은 북한사회에 전시체제의 경험을 깊숙이 각인시켰으며 피점령기 적들에게 동조한 구성원은 전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사회구조적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함으로써 구지배계층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박탈하고 사회적 일탈자들을 이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재사회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전시초기의 점령과 피점령, 그리고 재점령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거치며 북한사회를 적(敵)과 아(我)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점령기에 적들에게

동조한 인민들은 전시처벌에 회부되거나 군중심판을 통해 '이적행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셋째,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연장'됨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체제를 지속하게 된다.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고립시켜 나갔다.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단절의 구조 속에 개인은 원자화 되었으며 생산·생활공간에서 2중, 3중의 조직생활에 포섭되어 감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일탈과 처벌, 그리고 재사회화라는 사회통제의 의양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도출한 사회통제의 성격을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사회통제의 성격이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북한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2000, 편).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결정서(1946.12.14). 북한관계사료집 34.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9, 편). 문맹퇴치사업조직에 관한 결정서(1947.11.15),” 북한관계사료집 3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6, 편). 공민증에 관한 규정(1952.5.28). 북한관계사료집 24.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서울: 선인.

김남식 (1972).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편). 북한 공산화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김일성 (1996)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 시행요강에 관하여(내각 지시 제657호, 1951.3.24.).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24.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김일성 (1954a). 포고문(1951.2.24).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4b).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방송연설(1950.6.26).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54c). 북조선 정치정세(1948.4.21). 김일성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60). 20개조정강(1946.3.23.).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남상호 (1993a). 5가작통조직 강화에 대하여(1951.7.29).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남상호 (1993b). 군중심판 받은 자들의 감시투쟁 강화에 대하여(1951.6.26.).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남상호 (1993c). 요감시사업 재강화 보강에 대하여(1951.4.10.).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남상호 (1993d). 반동숙청사업 정형에 대하여(1951.2.23.).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박광섭, "한국전쟁전후의 북한 형사법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2)

박영자 (2005). 해방 60년, 북한 사회문화의 지속성과 변화: 생활문화와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전략, 5(1), 39.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1984).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

회 회의록 제28호. 북한관계사료집 Ⅱ.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1989,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서대숙 (2004,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1950.3.3).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Ⅴ.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서중석 외 (2010). 전장과 사람들. 서울: 선인.
서재진 (2002).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심현상 (1957). 조선형법해설. 평양: 국립출판사.
안찬일 외 (2006).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 후의 북한. 서울: 인간사랑.
오기완 (1972). 북한의 「천리마운동」. 공산권연구실(편). 북한 공산화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온죽 (1988).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우영 (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이종석 (1993).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학립 (2012). 북한의 범죄행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동북아논총, 63.
전현준 (2003).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전회림 (1993a). 단속통계표(1950.8.26.).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전회림 (1993b). 상부지시문 집행할데 대한 지시(1950.9.7).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전회림 (1993c). 월북자단속사업 강화에 대하여(1950.9.16).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ⅩⅥ.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 (1982). 당의 생활(1946.4.10).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 사료집 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편). 정치학교육 참고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1952, 편).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50.6.26). 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직업동맹출판사 (1964). 천리마 작업반 운동.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한락규 (1960). 공화국 형사입법의 발전. 안우형(편). 우리나라 법의 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한성훈 (2010). 한국전쟁과 북한 국민형성: 동원, 학살, 규율과 전쟁의 미시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인섭 (2009). 북한 형법의 변천과 현재.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학술대회자료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Liska, A (1986). 일탈 사회학. 서울: 경문사.

B. 진 밀러 & 윤혜미 (1995). 사회적 행동과 인관환경. 서울: 한울.

Maciver, Robert M & Page Charles H (1969). *Sociology: The Struchy of Human Rel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Inc.

Hall, Peter A (1986).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punishment on social deviance and its establishment of re-socialization in North Korea

Jeong, Il-Young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origin where features from social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in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largely consists of three periods, that is, the period of nation construction (1945-1950), the period of Korean War (1950-1953), the period of nation reconstruction (1950-1961). This paper provides that features from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from pre-Korean War to post-Korean War. The 'wartime socialism system' had been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reconstruction of postwar nation. In the system, North Korean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Key words : North Korea, Korean War, deviance, punishment, Re-socialization